

전문위원 검토보고

(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)

□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□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7년 1월 11일

○ 회부일자 : 2007년 1월 17일

□ 제안 이유

-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「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」 제45조(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 준용)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을 설치하고, 그 관리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 내용

-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, 직접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기금으로 출연하지 아니할 수 있음(안 제2조).
- 기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사용함(안 제3조).

- 기금은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하고,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함(안 제4조, 제5조).
- 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,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(안 제6조).
-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에 기획관리국장, 기금출납원에 지방채업무담당사무관을 회계공무원으로 지정함(안 제7조).
- 기금관리·운용 심의를 위하여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함(부칙 제3조).

□ 검토 의견

-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등의 필요로 발생한 지방채에 대한 안정적인 상환재원을 확보하여 건전재정운영을 도모코자 제정한 조례로, 기금조성의 목적과 관계 법령에 의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- 다만, 본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순세계 잉여금의 20%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것은 오히려 사업추진에 활용할수 있는 가용재원의 경직성을 증대시키고, 또한 자금 활용도가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

- 그리고 조례안 제1조의 조문 중 본 감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설치 근거 법령으로 명시한 “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5조”의 조문은 지난해 2006년 12월 20일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이 전부개정으로 조례 설치법령근거가 변경되었기, 법령근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“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조”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